

# 電氣關係 諸法規 相互補完에 關하여

A Study on Mutually Related Matters  
in Electric Laws and Regulations

(3)

林 大 喆

前 大田工業專門大學 教授겸 學監

## 5. 技術者의 教育에 관한 考察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모든 有資格技術者は 5年에 한번씩 教育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각各의 法에 의하여 一定期間마다 補修教育을 받게 되어 있다. 電氣工事業法에 의한 教育은 每年 冬節期 즉 工事が 거의 없는 時期를 택하여 教育함으로써 業主 및 被教育者の 便宜를 도모하고 있다. 그 教育을 正當한 事由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는 그에 대한 施工管理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令 第18條). 이에 비하여 電氣事業法에 의한 教育은 2年마다 1회씩 받게規定되고(規則第51條), 그 教育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業主가 해임하게 되어 있다(法 第42條). 그러므로 이 法을 慚用하면 4년에 1회만 教育을 받으면 그를 제재할 도리는 없다. 法 第42條는 2회 이상이라는 字句를 빼고 “正當한 事由 없이 教育을 받지 아니한 때는 그를 해임하여야 한다”고 改正하는 것이 電氣工事業法과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電氣工事技術者は 그가 專任職이므로 工事協會主管의 教育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自家用電

氣工作物의 保安擔當者は 電氣事業法에 의한 教育 이외에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에너지管理者로서의 教育, 產業安全保健法에 의한 安全管理者로서의 教育, 消防法에 의한 防火管理者로서의 教育을 받아야 한다. 各協會別로의 教育科目을 살펴보면 표9와 같다. 이 중에서 電氣 保安擔當者와 에너지管理者의 教育內容에는 共通된 것이 많다.

教育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理論은 成立되나 同一人에게 대하여 거의 같은 教育이 반복된다는 것은 教育을 받는 本人도 번거롭고, 企業主側에서 보면 教育回數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教育을 委託 받은 機關 또는 協會는 教育計劃을 每年初에 主務官署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教育의 時期와 教育課程을 調整하거나 또는 동일한 教育은 어느 한쪽에서 받은 경우 다른 機關의 것은 免除되는 制度가 要望된다.

위에서 설명한 教育의 時期와 教育內容 또는 重複되는 科目的 免除 등을 調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왜나하면 根據法이 다르고 主務官廳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調整의 主役이

## 〈五 9〉 各協會主管의 教育科目

( ) 내는 교육대상자

大韓電氣協會 (電氣保安擔當者)	韓國電氣工事協 (電氣工事技術者)	大韓產業安全協 (安全管理者)	에 너 지 管 理 公 國 (에너지管理者)
1. 정신교육	1. 工場設備	1. 產業安全	1. 政策方向
2. 電氣事業法解說	의 自動化	保健法解說	및 公圓業務 소개
3. 電氣供給規程解說	의 現代化	2. 安全管理	2. 受·變電設備의 에너지 節約
4. 電力電子工學	3. 使用前檢查에 대한	3. 機械安全	3. 電動力設備의 에너지 節約
5. 工場自動化에 있어 P.C.의 役割	施工管理	4. 電氣安全	4. 照明節電技法
6. 電動力設備의 損失低減法과 재크리스트	4. 產災保險法解說	5. 化工安全	5. 電力設備診斷
7. 效率的인 電氣管理(照明을 中心으로)	5. 災害豫防		6. 斷熱施工法
8. 受電設備의 維持 및 補修	6. 電氣設備技術基準令 및 關係規程解說		7. 自動制御利用技術
9. 節電型機資材 소개	7. 電力設備概要 및 電氣工事業法解說		8. 法規解說
	8. 地中電線路		9. 國民精神教育
	9. 하이테크施工技術		10. 質疑·討議 및 設問

없다. 여기서 電氣事業法에 의한 保安擔當者の 教育方法을 다음과 같이 改善하는 것이 效果的이라 생각된다. 즉, 現在는 外部講師를 초빙하여 教材에 따라 교육하고 있으나 이를 會員의 事例研究制度로 바꾸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5年마다 實施하는 教育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資格更新의 再教育이라 할 수 있으나 電氣事業法에 의한 2年마다의 教育은 補修教育 또는 實務教育의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教育을 받으면 곧 職場에서 活用되어야 한다.

事例中心의 教育을 하자면 그 課題와 發表者は 6個月 내지 1年前에 決定되어야 하며, 그 課題는 保安의 職務組織, 安全管理事例, 機器操作問題, 機器의 壽命延長事例, 機資材活用事例, 電力使用合理化事例 등 수 많은 課題가 제기될

수 있다. 現行教育制度는 被教育者가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事例教育은 하나하나가 새로운 것이고, 그 중에서 좋은 점은 곧바로 本人의 職務에 活用되므로 그效果는 매우 큰 것이다. 또한 事例發表는 技術向上 또는 原價節減의 目的外에 그 事業場의 弘報를 兼하게 되므로 所要經費는 發表者가 속하는 企業體에서 負擔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6. 종합적인 改善策

### 가. 法改正에 의한 改善方法

1986年末 現在 販賣電力量 56,310GWh인데 대하여 표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1年에는 그의 2.7倍가 넘는 155,924GWh로 豫想되는 바 그에 對處하여 現行政体制를 民間主導로 轉換하여야 한다. 그것의 概要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 電氣工事業法

現行 電氣工事業法 施行令 第34條의 第2項에 의하면 第1種工事業의 免許記載事項의 變更申告, 受給限度額의 策定, 電氣技術者의 補修教育만 協會에 委託되고, 第2種工事業에 대하여는 各市·道知事에게 委任되고 있다. 施行令 第34條를 改正하여 政府의 모든 行政을 協會에 委託하고, 協會는 委託받은 일을 處理함과 아울러 月 1回씩 各市道 및 主務官廳에 處理事項을 報告하게 한다. 즉, 官廳은 協會의 報告에 의하여 工事業에 관한 모든 事項을 파악하고 定期的 및 隨時로 協會를 監查하면 된다. 工事業에 관한 모든 것을 協會에 委託하였다 하여도 法 第33條에 있는 報告 및 檢查의 權限은 政府에 있게 되므로 계속 工事業者를 監督할 수 있는 것이다.

#### (2) 電氣事業法

電氣事業法에 있는 政府의 行政權은 2000年代를 대비하여 關聯民間團體에 委託하고 官廳은 이 단체를 定期的으로 또는 수시로 監督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電氣工事業法과 同一하게 電氣事業法에도 關聯團體의 設立에 關한 條項이 삽入되어야 할 것이다.

## 나. 地方自治制에 대비한 改善方法

電氣工事業法 施行令 第34條를 보면 政府의 權限中 15個項目이 道知事에게 委任되고, 단 3個項目만이 協會에 委託되고 있다. 電氣事業法 施行令 第22條에 따르면 道知事에게 委任된 것이 23個項目이고, 輸出自由地域管理所長에게 委託한 것이 7個項目인데 비하여 協會에 委託한 것은 施行規則 第51條에 의한 保安擔當者의 教育의 指定 뿐이다. 이와 같이 많은 權限이 道知事에게 委任되고 있는 時點에서 不遠間 地方自治制가 實施되면 그 委任받은 事項을 直接擔當하는 道가 있을 것이고, 下部官廳에 다시 委任하는 道가 있는가 하면 協會나 기타 團體에 委託하는 道도 있을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受任態勢를 갖추지 못한 道知事에게 많은 權限을 一時에 委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의 處理能力을 完備한 關聯民間단체에 委託하면 簡單히 解決되는 것이다. 또, 法을 改正하는 것은 地方自治가 實施되기 前에 이루어져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단체로서는 韓國電氣工事協會와 大韓電氣協會가 있으며 각기 分野別로 관련기술의 補給과 指導는 물론 문제점을 반ぐ, 制度改善에 率先하고 있으며 그組織 또한 각기 특성에 적절하며, 全國各地域마다 支部組織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현행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이들 단체에 委任함으로써 政府는 最少의 費用과 小數의 人力으로 行政을 效率化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政策中의 하나가 모든 產業部門을 政府主導에서 民間主導로 轉換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전기관계법령의 모든 行政上의 문제를 이들團體에 委託할 時機가 到來하였다 생각된다.

## 다. 民間단체 및 기관의 機能強化

### (1) 韓國電氣工事協會

社會의 모든 部門이 官廳主導에서 民間主導로 轉換하는 것에 대비하여 協會는 自律能力의 向上에 全力を 기울여야 한다. 電氣工事業의 利害關係에 대한 문제가 發生할 때 發注機關에 대

하여 항의 또는 建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協會自體에서 解決하는 方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例를 들면 一種業體가 二種工事業의 入札에 參加하는 것, 少額의 工事を 地方業體에 주지 아니하고 全國에서 應札하는 문제, 수의계약으로 될 것을 公開入札하여 혼잡을 이루는 문제 등은 法에 관계없이 協會의 理事會 또는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鋼制하면 된다.

즉, 少額工事, 例를 들어서 1億원이하의 工事는 道內業體만 參加한다든가, 1千萬원이하의 入札에는 아무도 應札하지 아니한다는 것 등을 總會에서 決議하고 實천하면 된다. 그에 따르지 않는 業體는 會員資格停止 등의 制裁로 해결하면 된다.

다음은 電氣工事業이 과거에 比하여 많이 發展되어 社會奉仕活動도 하고, 또 從業員의 海外研修로 技能向上을 도모하고 있으나 土建業 기타의 製造業 등에 비하면 아직도 英세하다는 評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協會는 영세화원업체의 合同을 誘導하여 大型業體로 育成함이 有利할 것이다. 2個業體가 合同하면 2名의 社長中 1名만의 社長으로 되는 不利는 있으나 資本金이 2倍로 되어 受給限度額이 2倍가 될 것이고, 事務員의 人件費 및 営業所의 維持費가 半減되며, 社會的인 信賴性이 向上되는 등 有利한 點이 많을 것이다. 合同을 誘導하자면 政府가 協會에서 수의계약의 우선권을 준다는 등의 特惠가 주어져야 한다.

工事業의 發展의 한가지는 法的인 免許上의 溢利는 同一하다 하여도 都給業과 下都給業體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相互間에 有利하다. 下都給專門으로 하더라도 會社의 선전비용이 必要없고, 應札에 所要되는 經費가 필요없으며, 設計要員 등의 人件費도 들지 아니하는 有利한 점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協會는 下都給業의 育成策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合同 또는 下都給業을 맡는 業體를 늘리어 競爭入札의 應札者數를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政府나 各機關의 1年間의 工事量과 豐算額은 決定되어 있는데 그 競爭이 심하여 豐定

額의 全額이 業體의 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發展을 못하는 것이다. 또, 豫定額의 90% 이하의 落札者는 얼마, 80% 이하의 落札者는 얼마의 違約金을 징수하는 決議도 필요하다. 이것은 協會가 돈이 必要하여서가 아니라 豫定額의 거의 全部를 業體의 손에 들어오게 하는 方法의 하나이다. 간혹 機關에서 工事金額을 過少하게 책정한 경우는 會長 또는 支部長이 會員全員에게 아무도 應札못하게 하는 긴급지시권을 委任하는 總會決議도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이의 實例는 書籍小賣商組合에서 冊을 定價대로 販賣하자는 決議로 過多競爭으로 도산 직전의 書籍商이 好況을 맞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일이 會員의 地位向上과 利益增大의 當面課題라 할 수 있다.

## (2) 大韓電氣協會

每年 電氣年鑑을 發行하는 外에 多數의 圖書를 發刊하여 電氣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 內線規程과 配電規程은 團體規格인 것이다. 國家規格보다 團體規格이 위력을 발휘할 경우에 그 나라의 產業은 發展하는 것이다. 國家規格은 統制의 뜻이 있으나 團體規格은 自律性의 성격으로 스스로 정하여 스스로 준수하는 長點이 있다. 그러므로 協會는 하루속히 電氣安全管理規程, 送電設備規程, 變電設備規程, 發電設備規程 등을 制定하여 會員社에 普及시키는 方向으로 일을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政府는 電氣事業法과 그 施行令만을 制定하여 그 行政을 全部 關聯協會에 委託함으로써 協會는 그 受託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準備하여야 할 것이다.

政府는 모든 國民에게 關聯되는 刑法, 稅法等一般法만을 다루고, 電氣事業法, 電氣工事業法等特定法의 施行은 可能한限 關聯民間團體나 協會에 委任, 委託함으로써 特定法 施行에 必要한 諸般 行政費用의 支出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7. 結論

電氣關係法規의 基本制度上에서 그 運用을 政

府主導에서 民間團體中心으로 轉換하는 것을 가장 力點을 두어 다루었다. 電氣事業의 初創期는 그 設備規模가 적어서 모든 것을 中央의 한 부서에서 統制와 監督을 하였고 또 그것이 可能하였으나 現在와 같이 방대한 電氣設備를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없게 되자 그 權限을 受任態勢가 미흡한 地方自治團體에大幅으로 委任하고 있는 실정이다. 不遠間에 地方自治制가 實施되면 그 權限을 直接 擔當하는 道가 있는가 하면 下部官署에 再委任하는 道도 있을 것이고 또 協會 등의 民間團體에 委託하는 道도 있을 것이므로 그 電氣行政을 中央에서 파악하기 힘들게 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電氣의 特性을 고려하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地方自治制가 實施되기 전에 施行令을 改正하여 工事業에 관한 것은 韓國電氣工事業協會에, 電氣事業에 관한 것은 大韓電氣協會等에 모든 行政을 委託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電氣事業法에 指定團體 또는 機關의 設立을 삽입하여 이 民間指定 단체 또는 기관은 電氣事業法上의 團體로 하고, 電氣事業者, 自家用電氣工作物設置者 및 指定調查機關은 法的으로 이 지정기관의 會員이 되도록 하여야 電氣工事業法, 產業安全保健法, 에너지 利用合理化法 등과의 균형이 맞게 된다.

協會 또는 民間단체에서 早速히 電氣安全管理規程이 制定되어야 한다. 安全에 관한 法規는 產業安全保健法이 主가 되어야 하나 이 法에서 電氣安全에 관한 規定은 韓國電力公社의 安全作業守則의 内容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安全管理規程이 制定되면, 電氣事業法, 電氣工事業法, 產業安全保健法, 에너지利用合理化法 등에서 電氣에 關한 安全은 “電氣安全管理規程”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 모든 문제가 簡單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協會 또는 民間단체에서는 送電設備規程, 變電設備規程, 發電設備規程을 만들어 電氣事業法 第36條(電氣工作物의 維持)에서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을 “指定機關 또는 團體制定 諸規程에 적합하도록”으로 改正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電氣設備技術基準에 關한 規則의 細部事項

을定하는告示事項이 52個事項, 別表 36個, 附表 37個 등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할事項이다.

다음은電氣保安에 관한現行法規를 보면電氣工事業法과電氣事業法에서上級技術資格者만을規定하고, 그下部職員에 대한資格規定이 전혀없는實情이다. 國家技術資格法上에는技術系와技能系를同一하게社會의으로우대한다고規定하면서電氣關係法規에서는技能系에 대하여 아무런施策도강구되지아니하고있다. 그러므로電氣工事에從事하는職員과自家用電氣工作物設置場所의保安業務에從事하는職員은 해당분야의有資格者만으로構成케하고, 그所有資格種類와免許番號가記載된名簿를每年末에監督廳에提出하도록規定을改正하여야한다.

電氣工事業이法人의경우는任員中 1名이상이電氣技術者로되어있으나,業體가個人의경우에는技術者가고용인으로되어있다. 이는國家技術資格法의취지에따라個人業體는有資格技術者에한하여免許를부여하여야한다.

自家用電氣工作物의保安擔當者は專任職으로되어야한다. 이문제는電氣設備의運轉責任者格인保安擔當者が兼任이나保安代行으로될수없다는一般的인理論上으로도그리하고, 다른法의規形에도어긋나는일이다. 이와같은理論은製造業의경우를대상으로생각한것이고,契約電力 300kW미만의自家用電氣工作物은一般用電氣工作物과同一한아파트, 빌딩, 官廳, 學校등이 많으므로兼務나保安代行을참

정적으로許容하는것이좋다. 또, 300kW미만은現行施行規則第47條의2에작은규모의設備라는규정에도맞으므로이와같은方向으로電氣事業法施行規則을改正하여야한다.

自家用電氣工作物은2年에한번씩定期檢查를받아야한다. 現行法에따르면電氣事業用電氣工作物의重要機器는定期檢查를받게되어있고,一般用電氣工作物은2年에한번씩調查하게되어있다. 이調查는명칭은다르나하나의定期檢查이다. 여기서제외된것이自家用電氣工作物인고로自家用電氣工作物도一定期間마다檢查를받는規定이必要한것이다. 定期檢查는使用前檢查에合格한工作物이라하여도時日의經過에따라그劣化된程度를點検하는것이므로自家用電氣工作物이라하여제외될수는없는것이다.自家用電氣工作物의定期檢查制를導入함으로써指定調查機關의保安代行要員은그裝備와더불어定期檢查員으로委託을받으면된다.

이와같은方向으로法이改正施行됨으로써電力會社는電力供給에란,指定調查機關은調查및檢查業務만을專擔하고,工事協會는電氣工事業의諸行政을,電氣協會등에서는自家用電氣工作物의保安業務의行政을맡고,官廳은電氣事業의許可,電氣供給規程,指定調查機關의業務規程의認可와電氣事業의長期計劃의承認및電力行政의施策,監督權만을行使하면體系가確立되는것과동시에名實共허民間主導가될것이다.

## 참 고 문 헌

1. 産業安全技士補修教育教材(87年度), p. 104. 大韓產業安全協會
2. AMERICAN STANDARD REQUIREMENTS FOR RESIDENTIAL WIRING, 美國標準協會.
3. 電氣工事讀本, 池田榮一著, p. 1~206, オーム社
4. 電氣年鑑(88年度), p. 41, p. 49, 大韓電氣協會
5. 朝鮮日報 1988. 6. 23日字
6. 電氣法規, p. 45 石井泰安著, 森北出版社
7. 新電氣事業法(上)(下) 吳成煥著, 大韓電氣主任技術者協會
8. 調査研究論文(87年度) p. 81 大韓電氣協會
9. 國家技術資格法解說 科學技術處
10. 電氣關係法規集 技多利
11. 電氣と工事 1988年 1月号 p. 29~p. 51 オーム社

## 自動車 에너지 節約

### 불필요한 급브레이크(급제동) 를 피합시다

○급브레이크를 하게되면 차의앞으로하중이  
치우치게되므로 상당히 위험할뿐만 아니라  
연료소비량도 통상의 엔진브레이크(서서히제  
동)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많아집니다.

○급제동을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운행하도록  
합시다.

## 附錄：電氣關係諸法規 相互比較 및 改善方案 (綜合要約)

### 1. 電氣安全管理規程 制定

電氣事業法	電氣工事業法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産業安全保健法	改善 方 案
公共의 安全을 확보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第1條)하고, 기술基準에 적합하 도록 電氣工作物을 유지할 것과(第36條), 各事業體가 保安規 程을 作成 제출케 되 어 있음(제39條).	電氣工事의 安全하 고 적정한 施工를 하 게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한다고 목적에 제시하고(第1條), 電 氣技術者의 職務로 서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法 및 기타의 법 령에 적합하게 施工 management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第 20條).	安全管理에 관한 사 項을 규정한다고 하 고(第1條), 各事業體 가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當局에 제출 하게 되어 있음(第 43條의 3).	電氣安全에 관하 여 施行規則 第170 條부터 第178條까 지 9個條에 걸쳐 서 규정되었음.	安全에 관하여各法規가 산발적 으로 규정한 것을統一을 기하 기 위하여現在 韓電에서 實施 하고 있는 安全作業守則을 學會, 協會 등에서 인수하여 電氣安 全管理規程”이라는 명칭으로 制定 하고, 各法規에서는 電氣安全에 관하여“電氣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된 다.

### 2. 内線規程 등의 活用 法制化

政府制定 各種 技術基準					民間制定 各種 規程				改 善 方 法	
電氣設備技術基準에 관한規則	發電用火力設備技術基準令	發電用水力設備技術基準令	電氣工作物熔接技術基準令	合計	内線規程	配電規程	安全作業守則	合計	改 善 方 法	
本文 288조	本文 40조	本文 43조	本文 25조	本文 396조	本文 720	本文 166	本文 367	本文 1253	電氣事業法, 同施行令, 同施行規則만을 政府에서 관장하고 各種技術基準을 정 하는 567個事項의 규칙, 告示, 別表 등 은 學會 또는 協會의 단체규격으로 위 임하고 電氣事業法를 다음과 같이 改 正하여 法制化한다. 第36條電氣事業者は 그 보안책임하여 電氣工作物을 學會(또는 協會)에서 制 定한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하 여야 한다.	
告 示 52	告 示 20	告 示 17	告 示 6	告 示 95	부 록 41	부 록 8		부 록 49		
別 表 36	別 表 3			別 表 39						
附 表 37				附 表 37						
計 413	計 63	計 60	計 31	計 567	計 761	計 174	計 367	計 1302		

### 3. 一般用電氣工作物의 調査 一元化

調査委託의 근거	調査業務內容	現行方法	改 善 方 法
電氣事業者は 一般 用 電氣工作物이 技 術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調査하여야 한다(第45條). 電氣事業者は 指定	電氣事業者は 一般 用 電氣工作物을 調 査한 결과 技術基準 에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技術	一般用電氣工作物의 調査를 設置된 때는 電氣事業者が 하고, 그 조사 후 2年마다 는 指定調査機關이 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調査區域의 全部 또는 一部라는 뜻으 로 調査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라는 것은 아니다. 그 러므로 委託를 하는 경우에는 電氣工作物이 設置된 때 및 그 후 2年마다의 調査業務 全部를 指定 調査 機關에 委託하여야 한다.

調査委託의 근거	調査業務内容	現行方法	改 善 方 法
調査機關에 調査區域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는 一般用電氣工作物의 調査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第46條).	基準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되는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第45條) 一般用電氣工作物의 調査는 그 T.작물이 設置된 때 및 그 조사후 2년에 1회 할 것(규칙 제52조).		

#### 4. 自家用 電氣工作物에 대한 定期検査制度 마련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	自家用 電氣工作物	一般用 電氣工作物	改 善 方 案
電氣事業用電氣工作物 중 중요한 것은定期로 檢査를 받아야 한다(第35條). 檢査를 받아야 할 중요한 電氣工作物은 汽力發電所의 증기터미널, 보일러, 증기저장기, 가스터미널으로서 최고 사용압력 $0 \text{ kg/cm}^2$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규칙 제43조).	第35條 내지 第38條의 규정은自家用電氣工作物에 이를 준용한다(第51條).	電氣事業者は一般用電氣工作物이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第45條). 電氣事業자는 지정조사기관에 調査區域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는 일반용전기공작물의 調査業務를 위탁할 수 있다(第46條).	一般用電氣工作物의 調査는 實質적으로 定期検査인 바自家用의 受電設備는 波及事故로 인한 被害가 우려되므로 定期的인 檢査가 요망되고 또 現在 道知事 또는 消防署의 의뢰로 수시로 지정조사기관에서 檢査하고 있다. 이것을 施行規則 第43條의 제3호에自家用電氣工作物 중 高壓以上의 受電設備를 追加함.

#### 5. 電氣保安擔當者の 選任制度 개선

電氣事業法	電氣事業法	消防法	改 善 方 法
専任의 保安擔當者 이외에 1000kW미만은 兼任制가 있고, 또 上限없이 保安代行制가 있다.	第18條 工事業자는 電氣技術者が 아닌 자에게 電氣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1條 電氣技術자는 2개이상의 事業體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2條의 11① 消防設備工事는 消防設備技士의 責任下에 施工管理를 하여야 한다. 第42條의 13② 消防設備技士는 동시에 2이상의 事業體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1. 保安擔當者は 専任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은 규모의自家用電氣工作物은 一般用電氣工作物과 유사하므로 최대전력 300kW 미만에 한하여 동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兼任 또는 保安代行을 한다. 2. 300kW미만이라는 것은 1973. 2. 8 新電氣事業法 制定當時에도 300kW미만에 한하여 保安代行을 허용하였고, 또 施行規則 第47條의 2에 작은 규모라는 것을 300kW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 6. 電氣事業體와自家用電氣工作物 施設業體에 計測器 등의 비치

電氣事業體	指定調査機關	電氣事業體	自家用電氣工作物施設業體	改 善 方 法
第7條 免許基準에서 工事에 必要한 시설 및 장비로서 第1種은	施行規則 第58條에서 保安契約을 하는 경우에 결연저항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기술者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一定한 計測器 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電氣事業體와自家用電氣工作物 施設業體는 그 규모가 千差萬別이므로一律의 규정은 될 수 없다.

電氣工事業體	指定調査機関	電氣事業體	自家用電氣工作物施設業體	改善方法
유압식 工具 등 16종, 第2種은 크온메터 등 8종 으로 되어 있음.	등 8종류의 기 구 및 시험 장치 가 있어야 한다.			施行規則 第45條의 保安規程에 “9. 그 事業場에 必要한 計測器 및 工具類와 電線, 開閉器 기타의豫備品의 保有事項”을 追加한다.

## 7. 非規格品 使用의 단속

電氣用品安全管理法	電氣工事業法	現在의 단속방법	改善方法
<p>1. 電氣用品의 판매 업자는 형식승인 표시가 없는 것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면 아니된다(第14條).</p> <p>2. 電氣事業者, 自家用電氣工作物設置者 또는 電氣工事業者는 형식승인 표시가 없는 電氣用品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第15條).</p> <p>3.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第33條).</p>	<p>1. 工事業者は 형식승인 또는 규격표시품이 아닌 電氣用品을 電氣工事에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第27條).</p> <p>2. 위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第48條).</p> <p>3. 第27條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엄연히를 최소할 수 있다(第31條).</p>	<p>1. 官廳에서 판매업을 조사하여 비규격품을 수거하고 있다.</p> <p>2. 감독관청은 工事業者の 申告를 바라고 있고, 경찰은 피해자의 고발을 바라고 있다.</p>	<p>非規格品의 使用은 無免許業者が 使用하고 合法化하기 위하여 正式業者の 명의로 施工되는 것이므로 工事業者の自律의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1. 電氣工事業法 第37條(會員의 資格) 第3項에 “會員中에서 非規格品을 使用하거나 無免許者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는 理事會의 결의에 의하여 除名한다.”를 추가한다.</p> <p>2. 第31條(工事業의 免許의 取消) 第11號에 “協會에서 除名된 때”를 추가한다.</p>

## 8. 有資格技能士 活用의 강구

國家技術資格法	電氣事業法	電氣工事業法	現行制度	改善方法
第10條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技術資格取得者의 經濟的, 社會的地位의 적정한 維持와 그 就業 및 身分保障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p>施行規則 第52條 一般用電氣工作物의 調査는 教育法에 의한 高等學校에서 電氣에 관한 學科를 이수하고 卒業한 者…</p> <p>電氣設備技術基準에 관한 規則 第57條 發電所(變電所)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자(技術員)가 당해 發電所(變電所)의 상시감시를…</p>	<p>기술系의 資格規定이 있고, 技能士에 대한 규정은 없음.</p>	<p>電氣事業法은 學校卒業을 資格要件으로 하고, 電氣工事業法은 上位職(管理職) 만의 資格을 규정하고 實地의 施工者の 資格규정은 없음.</p>	<p>1. 電氣事業法上의 電氣調查員과 發電所 및 變電所의 技術員은 해당분야 技能士 2級以上의 有資格者를 就業要件으로 한다.</p> <p>2. 電氣工事의 直接工事에 從事하는 者는 技能士 2級以上의 有資格者라야 한다.</p>

## 9. 個人工事業은 技術者에게만 免許부여

國家技術資格法	電氣工事業法	改善方法
第10條 ②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技術分野에 관한 營業을 許可하거나 權利의 設定其他 利益을 부여하는 때에는 당해 技術分野의 資格取得者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p>施行令 第8條 別表 1 電氣技術者は 전임직으로 상시보유하여야 하며, 法人의 경우에는 任員中 1人 이상이 電氣技術者이어야 한다.</p>	<p>工事業의 현지기준에서 技術能力을 國家技術資格法와 취지에 맞게 施行令 別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業體가 個人的 경우에는 電氣技術者이어야 하고, 法人的 경우에는 任員中 1人 이상이 電氣技術者이어야 한다.</p>

10. 電氣事業法에 協會의 設立 규정

電氣事業法	電氣工事業法	기타의 法에 의한 協會	改善方法
協會의 設立 无 정 없음	第35條(韓國電氣工事協會의 設立) 第36條(協會의 定款 등) 第37條(會員의 資格) 第38條(建議와 問問) 第39條(類似 名稱의 使用禁止) 第40條(民法의 準用)	1. 產業安全保健法에 의한 產業安全協會 2. 消防法에 의한 消防安全協會 3.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標準協會 4.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 5. 國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리 공단	電氣事業法에 協會設立에 關한 事項을 定하고 細部事項은 施行規則으로 정한다.

11. 行政體制를 官廳主導에서 民間主導로 轉換

電氣事業法委託事項	電氣工事業法委託事項	改善方法
1. 道知事에 委任한 것 24個項 2.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에게 委託한 것 6個項 3. 協會에 委託한 것 技術者의 教 育에 관한 1個項	1. 道知事에 委任한 것 15個 項 2. 協會에 委託한 것 第1種 工事業의 면허기재 사항 변경신고, 수급한도 액의 산정, 기술자의 보수 교육 등 3個項	1. 自家用電氣工作物은 工事計劃의 認可, 工事計劃의 事前申告, 使用開始申告의 세가지로 設置가 확인 되는 것을 登錄制로 一元化하고 可能한 모든 行政 을 協會에 委託한다. 2. 工事業의 免許後에는 모든 行政을 協會에 委託하 고 官廳은 감독에만 힘쓴다.

## 일본 전기설비 시찰 안내

본 협회에서는 일본국의 우수전기설비 관리업체 시찰로 국내 전기설비 운영제도와 비교 겸  
토하여 전기설비 관리기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본 산업계의 전기설비 현황 시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시찰기간 : '89. 6. 19~6. 25 (6박 7일)
2. 시찰대상 : 가. 우수전기설비 관리업체 (보안담당자 선임업체) 나. 전기사용합리화 우수업체 (Intelligent Bldg 포함) 다. 전기설비관리제도 (보안담당업무) 현황 라. 기타관련설비 견학
3. 시찰인원 : 15명 (선착순)
4. 참가비용 : ₩1,200,000 (인원증감에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5. 참가신청
  - 가. 접수기간 : '89. 4. 1~4. 29 (1개월)
  - 나. 접수방법 : 소정의 신청서 접수 및 예약금 24만원을 동시 수납 (잔액은 출국 30일전까지 완납)
  - 다. 여권수속 : 참가신청시 구비서류 양식 배부 (수속비는 본인부담)
  - 라. 접수처 : 대한전기협회 조사부 (274-1661~5)
6. 방문지 : 동경, 교토, 나라, 오사카